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3072

2022년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1월 21일 이성배 의원(찬성24명)

2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3. 상정일자 :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2월 10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성배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, 이에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전·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를 하 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3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모자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

1 조례안의 개요

 동 개정안은 임산부의 산전·산후우울증 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 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임산부의 산전·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(안 제4조의3 신설)

-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 증 검사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「모자보건 법」제10조의51)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.
-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상당히 중요한 출산 지원·장려 방안일 수 있는 바,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한편 산전·산후우울증 유병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나, 50-70%의 산모에서 경 증의 산후우울감, 8-20% 정도가 산후우울증, 0.14-0.26% 정도가 정신 이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²), 산후우울증에 대해 진

^{1) 「}모자보건법」제10조의5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.4%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³⁾.

- 참고로「모자보건법」을 근거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산 전·후 우울증 진단 및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,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후 우 울증 검사를 포함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. 또한 자치구마다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 여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음.
- 서울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12
 조 6,108억원을 지원하고, 2021년도 3조 1,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4, 매해 전국 최저의 출산율 및 2020년 기준 0.64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.
- 특히 산모의 정신건강은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아 상호작용을 통한 영아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, 이후 산모의 추가 출산의 결정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5) 향후 개정안에 따른 산전·산후우울증을 포함한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.

²⁾ 대한산부인과학회(2019). 산과학(개정 6판). 서울: 군자출판사.; 이재희·이정림·엄지원·김희선(2020),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, 육아정책연구소, pp. 42. 재인용.

³⁾ 이소영·김은정·박종서·변수정·오미애·이상림·이지혜(2018),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·복지 실태조사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pp. 176.

^{4) &}quot;제4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(2021~2025) 2021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"(서울 특별시 가족담당관-6488, 2021,3.15.)

⁵⁾ 이소영·임지영·홍진효(2017),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, 한국보건 사회연구원, pp. 14, 153.

3 종합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산전·산후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

3072

발 의 년 월 일 :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:이성배 의원(1명) 차 성 자 :고병국, 권수정, 김

자 :고병국, 권수정, 김경영, 김경우, 김기대, 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 김화숙, 김희걸, 노식래, 문병훈, 박기열, 박기재, 박순규, 오현정, 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 장상기, 전석기, 최 선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○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바, 이에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출산 전·후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3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모자보건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3(산전・산후 우울증 검사
	등 지원) 시장은 임산부에게 필
	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
	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
	<u>원을 할 수 있다.</u>

문서번호

2022012000000016

미첨부사유서(1호)

요 청 인 : 이성배 의원 담 당 : 조도형 과장

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

접 수 일: 2022.01.20

회 신 일 : 2022.01.20 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- 나, 추계결과 = 250,000천원(연평균 50,000천원)
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0,000천원으로 연평균 50,000천원임
 - 추계의 전제
 -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전제
 -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250,000천원(연평균 50,000천원)
- 총비용 =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비용 ≒ 25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계
세입	-	-	-	_	-	_	_
세월	소계(a)	-	_	_	-	_	-
세출	우울증 검사 비용 (제4조의3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	소계(b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	총비용(b-a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
○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≒ 250,000천원 = 연 50,000천원 x 5년

※ 2022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참조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2 02-2180-7955

e-mail: kjh0123@seoul.go.kr